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한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6.

발의자 : 한선교 · 이우현 · 이종배

정용기 · 김선동 · 김석기

염동열 · 이은재 · 신상진

이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, 횡령 및 유용,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,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
예를 들어, 이사장이 학교회계 자금의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더라도,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우선되며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, 임원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회계부정이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대비조치가 없는 상태임.

반면, 국내 사립학교의 경우 「사립학교법」 제20조의2(임원취임의

승인취소)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, 횡령,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교직원에 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국내 사립학교에 준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규정을 강화하여 재외한국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제3호,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).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, 횡령,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.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임원의 직무집행정지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
가 진행 중일 때

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
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
있다고 인정되는 때

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
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부 칙

i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임원의 승인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 교육부장관은 당해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15조(임원의 승인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.</p> <p><후단 삭제> 다만,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, 횡령,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1. · 2. (생 략) <신 설>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<신 설>

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
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
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
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
어야 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
과 같음)

제15조의2(임원의 직무집행정지)

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
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,
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
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
장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
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
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

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
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
직무를 집행할 경우 범인 또
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
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
되는 때

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
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

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
제하여야 한다.